

V. 일 본

1. 개 요

예산관련 제출서류	제출시기
가. 일반회계예산서(총 901페이지)	
나. 특별회계예산서(총 765페이지)	1월 하순
다. 정부관계기관예산서(총 170페이지)	의회 제출
라. 재정법 제28조에 의한 예산참고서류(총 569페이지)	

- 일본의 정부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정부관계기관 예산으로 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정부관계기관 예산은 모두 국회의결대상

- 특별회계는 재정법 제13조 2항에 의거 특정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특정 자금으로 사업수행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됨
 - 2002년 기준 특별회계는 사업특별회계, 자금운용특별회계, 경리구분특별회계의 3가지로 구분, 총 37개의 특별회계 설치

- 정부관계기관의 예산이란, 특별법에 근거하여 자본금 전액이 정부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예산을 뜻함
 - 2004년말 기준 총 9개의 정부관계기관이 존재

- 따라서 일본의 예산관련 국회제출서류는 일반회계·특별회계·정부관계기관 예산서로서, 이외에 재정법 제28조에 의한 예산참고서류가 작성·제출됨

- 일본의 예산서류는 회계별로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이월명허비¹⁵⁾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로 구성됨(재정법 제16조)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있어 그 적용 범위에 차등이 있음
 -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예산의 경우 각 예산서에 있어 예산총칙이 존재하지 않으며, 세입세출예산서에 있어서도 조직별 분류를 하지 않음

- 예산서 작성과 별도로 내각은 재정법 제46조 제1항에 의해 예산이 성립한 때 다음의 사항을 인쇄물·강연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국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음
 -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공채와 당해연도 예산
 - 차입금 및 국유재산의 현재액
 - 그 외 재정에 관한 일반의 사항

- 재정법 제46조 조항은 2002년 재정법에 추가된 조항으로 국민에 대한 정부의 재정 보고를 명시하고 있음
 - 재정법 제46조 제1항 : “내각은 예산이 성립했을 때 그 즉시 예산, 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 및 공채, 차입금 및 국유재산의 현재액 그 외 재정에 관한 일반의 사항에 대해 인쇄물, 강연 등 적당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재정법 제46조 제2항 : “내각은 적어도 매분기마다 예산 사용의 상황, 국고의 상황 그 외 재정의 상황에 대해, 국회 및 국민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15) 우리나라의 명시이월비에 해당. 명시이월비란 예산회계법 제23조에 규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로써,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명시이월비는 동법 제38조에 규정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이다.

2. 국회제출 서류

가. 일반회계예산서

분량 : 총 901페이지

내용 : 2004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및 이월명허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에 대한 편성내역 및 관련 사항

2004 일반회계 예산서 목차

목차	분량	개요
1) 예산총칙	24페이지	예산에 대한 총괄 규정
2) 갑호(甲号) 세입세출예산서	56페이지	소관부처별 세입 및 세출 예산
3) 을호(乙号) 계속비	4페이지	소관별 계속비 편성 내역
4) 병호(丙号) 이월명허비	16페이지	소관·조직별 이월명허(繰越明許) 사항
5) 정호(丁号) 국고채무부담행위	16페이지	소관·조직별 채무부담 한도, 채무 발생 및 상환연도
6) 첨부	766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법에 따른 공채 발행 예정, 발행된 공채의 내역, 공채상환계획표의 공개 ○ 일반회계예산참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예산명세서 - 각 성(省)·청(廳) 예정경비요구서 등
7) 참고	19페이지	예정경비요구서 항(項)의 색인 코드번호 소개

1) 예산총칙

분량 : 24페이지

내용 : 세입세출예산·계속비·이월명허비(繰越明許費)·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근거법령 등의 총괄적 규정을 마련하고 예산액 및 내역에 관한 요약 정보 제공(재정법 제22조)

□ 또한 다음 사항에 대한 규정(재정법 제22조 제1항~7항)

- 공채발행 및 일시차입금 등의 한도액
- 공공사업비의 범위
- 일본은행의 공채인수 및 차입한도액
- 재무성 증권의 발행 및 일시차입금 차입한도액
-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
- 그 외 예산의 집행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 그 외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세입세출예산

□ 세입세출예산은 그 수입 또는 지출에 관련된 소관 부처별로 구분·작성

- 이러한 부처별 조직 구분은 재정법 제23조에 규정된 것으로서 예산의 집행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 한편 부처별 구분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있어 조직 구분의 단계에 차이가 있음
 - 세입예산에서는 “주관”기관까지 예산서를 작성하나, 세출예산의 경우 “소관”기관 및 “조직”기관으로 보다 세분하여 예산서를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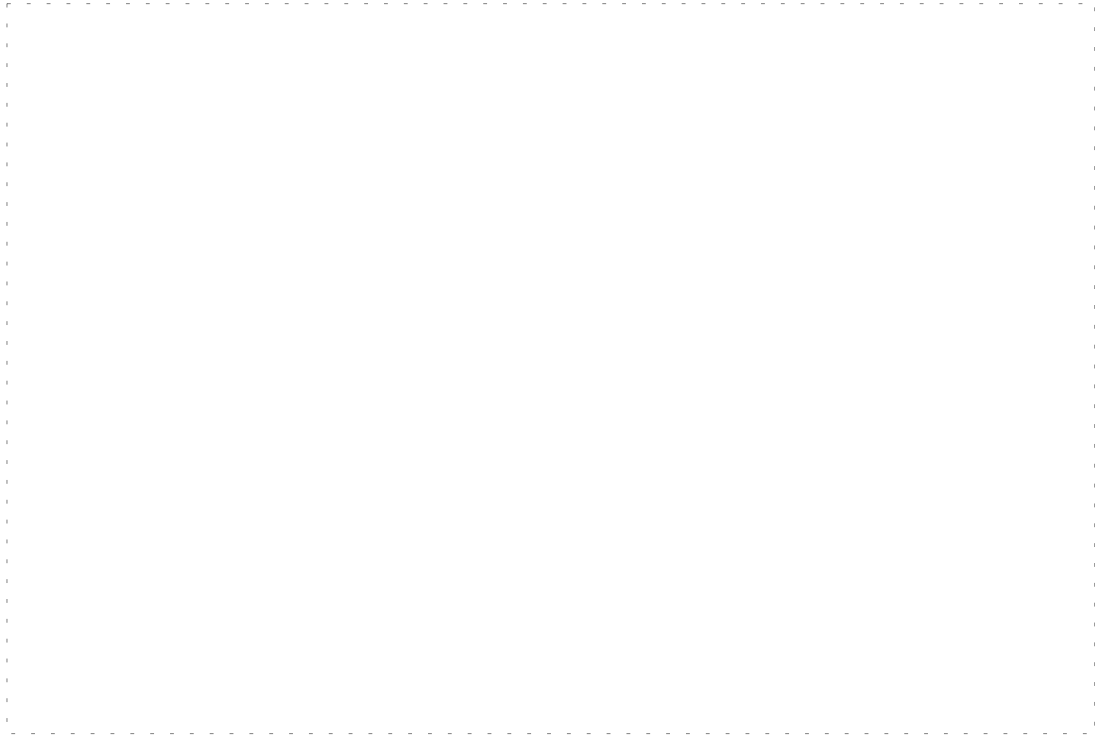
□ 세입예산의 경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관”기관에 대해 성질별로 해당하는 부(部), 관(款), 항(項) 단위까지 구분하여 세입 예산액을 명시

- 그러나 주관기관 및 부, 관, 항의 사용에 있어 별다른 코드 번호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음

□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소관 기관 및 하부 조직별 항(項) 단위까지 세출액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재정법 제23조)

□ 일반 세출항목과 별도로 예견하기 어려운 예산의 부족 등에 충당하기 위해 내각은 예비비로서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재정법 제24조)

[그림 V - 1]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중 세입 부분



[그림 V - 2]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중 세출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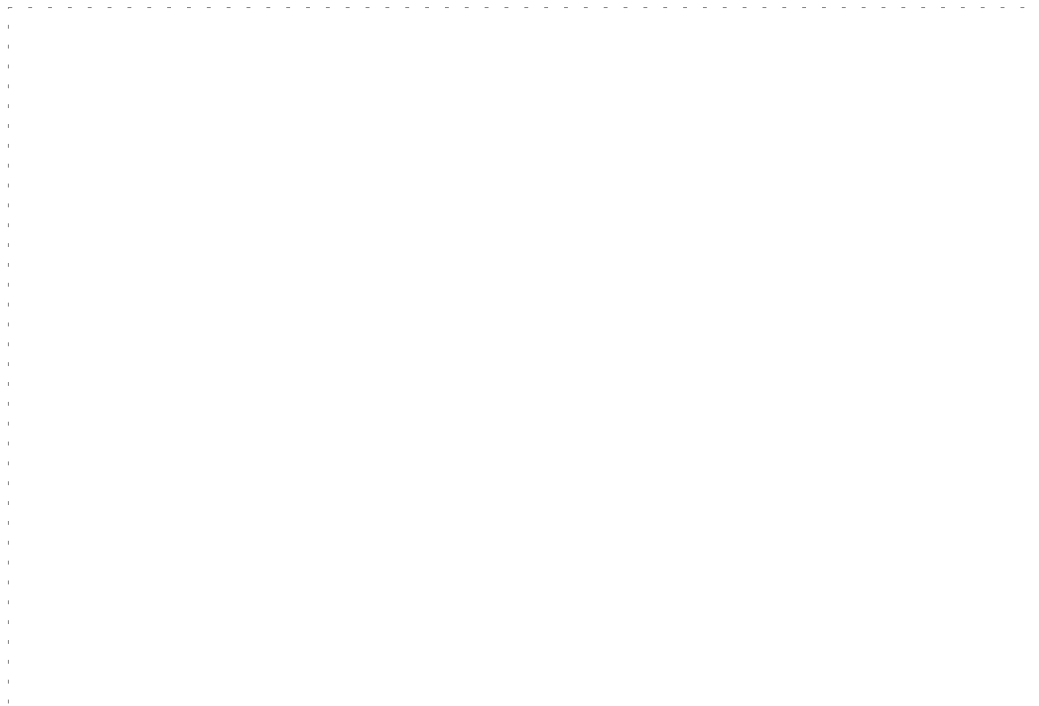


3) 계속비

□ 계속비는 공사, 제조 그 외 사업에 있어 그 완성까지 수년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예산으로, 현재는 주로 방위비 등에 활용되고 있음

- 그러나 계속비 항목은 예산원칙¹⁶⁾의 하나인 단년도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특히 필요한 경우(재정법 제14조의2)”에 한정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그 지출기간은 5년 이내로 제한됨
- 단,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그 연도를 연장할 수 있음
- 계속비에 대해서도 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내역을 보고하여야 함

[그림 V -3] 일반회계 계속비 예산서



□ 계속비 예산서의 형식은 다음과 같음(재정법 제25조, [그림 V -3] 참조)

- 지출 관련 소관 부처와 조직별로 구분·작성
- 항(項)에서 계속비 발생 연도 및 총액, 연할액(年割額) 표시

16) 예산원칙으로는 예산 내용에 관한 완전성의 원칙, 형식에 관한 통일성·명료성의 원칙, 편성에 있어서의 엄밀성·사전성의 원칙, 집행에 있어 구속성의 원칙, 예산 전 과정에 있어서의 공개성의 원칙이 있으며, 구속성의 원칙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초과지출금지의 원칙, 유용금지의 원칙으로 세분할 수 있다.

주요국의 예산서 형식

- 계속비의 필요 이유에 대해 명시

4) 이월명허비(繰越明許費)

- 이월명허비란 그 성질상 또는 예산 성립후의 사유에 의해 연도내에 지출이 종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예산 경비
 -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거친 뒤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비용(재정법 제14조의 3)
 -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85조에 의해 공공사업과 같이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이월이 허용됨

[그림 V-4] 일반회계 이월명허비 예산서



- 이월명허비 예산서의 형식을 살펴보면 [그림 V-4]과 같음
 - 소관 조직별로 이월 사항을 항(項)으로 구분·명시
 - 계속비와 달리 국회의 의결을 거치면 이월 사용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기한의 제약이 없음
 - 따라서 이월명허비 예산서에는 해당 소관 조직에서 추진했던 최초의 사

업 또는 발생원인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월된 기간, 해당 이월비 금액에 대한 정보 역시 확인할 수 없음

5)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고채무부담행위란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서, 세출예산 금액 및 계속비 총액의 범위 외에 국비의 지출을 통해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행위를 말함
 -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국가가 1회계연도를 넘는 기간에 걸쳐서 계속되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수년에 걸친 외국인 고용계약 ·토지 임차계약 등)
 - 국가가 주채무를 부담하는 계약뿐만 아니라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계약까지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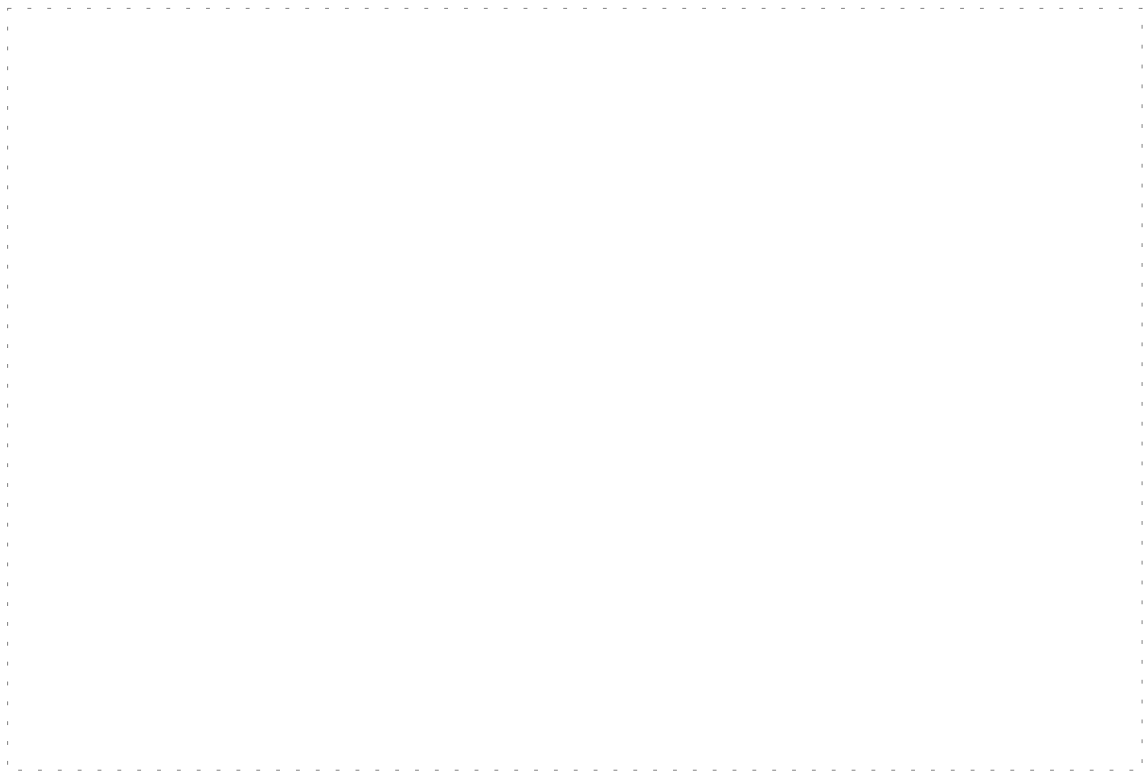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미리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재정법 제15조)
 - 채무부담 권한을 요구하는 행위는 각 사항마다 그 필요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행위를 이루는 연도 및 채무부담의 한도액을 명확히 설정해야 함(재정법 제26조)
 - 이러한 국고채무부담행위는 특정적 의결에 의한 국고채무 부담행위와 비특정적 의결에 의한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분

- 재정법 제1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고채무부담행위 외에도 재해복구 및 그 외 긴급한 사항에 있어서는 국가가 매 회계연도 국회의 의결을 거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채무부담행위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음(재정법 제15조 2)
 - 이러한 채무부담행위는 계속비와 동일하게 그 지출 연한을 해당 회계연도 이후 5개년도 이내로 한정
 - 단, 국회의 의결을 통해 그 연도를 더욱 연장하거나,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급료 및 공제연금, 지방공공단체의 채무의 보증 또는 채무의 원리금, 토지·건물의 임대료 및 국제조약에 따른 분담금에 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음(재정법 제15조 3)

주요국의 예산서 형식

-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예산서 형식은 다음과 같음
 - 소관별 세부 조직으로 구분한 뒤,
 - 해당 조직별로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사항을 주로 사업의 형태로 표시
 - 사업별로 그 한도액을 명시하고 채무부담행위가 발생한 연도를 표기한 뒤 앞으로의 부담 연도를 제시
 - 비고란에는 이러한 국고채무부담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적어 해당 채무부담의 원인 및 배경을 설명함

[그림 V -5] 일반회계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서



6) 일반회계 예산서 참조 - 부속서류

가) 재정법 규정에 따른 해당연도 발행 예정인 공채의 상환계획

- 일반회계 예산서의 첨부서류로서 재정법 규정에 따른 해당 연도 발행 예정인 공채의 상환계획에 대한 정보가 제시됨

- 재정법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은 상환계획표 작성
 - 해당 연도에 발행을 예정하는 공채의 상환 계획표
 - 재정운영을위한공채발행특례등에관한법률(가칭)의 규정에 의해 작성되는 발행예정공채 상환계획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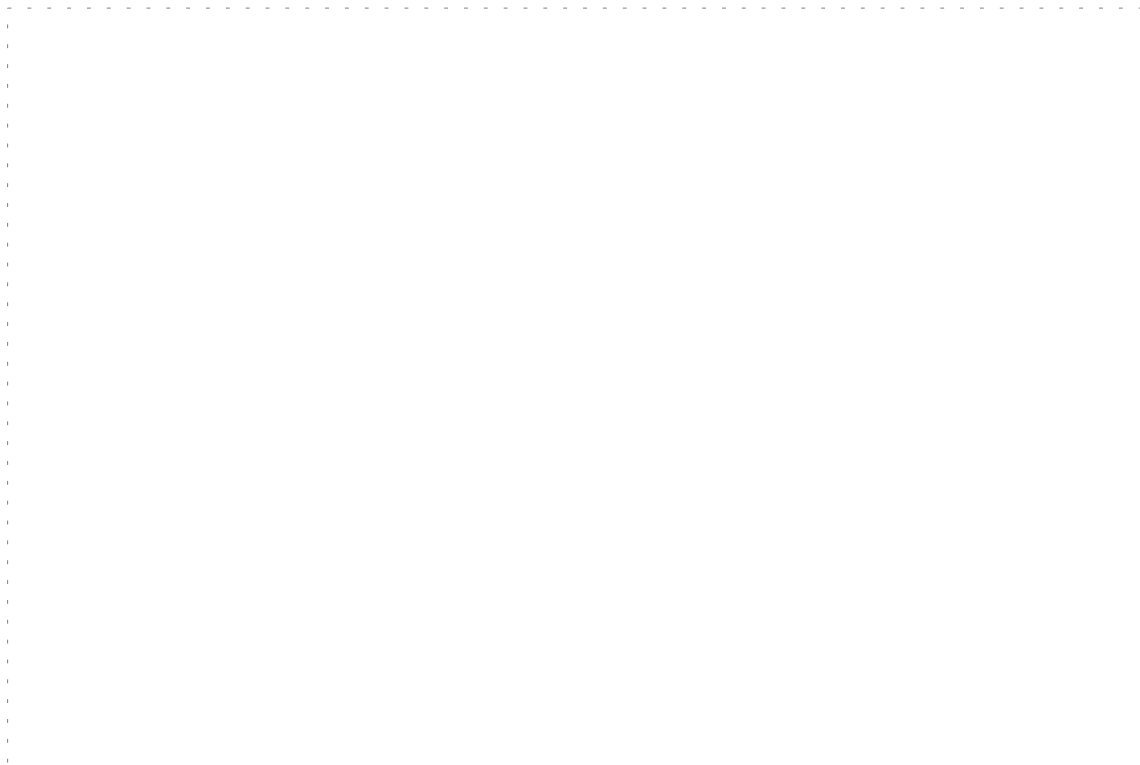
- 이러한 상황계획표에서는 발행예정인 공채의 발행액과 연도, 이후 상환 연도와 상환액에 관한 정보가 제시됨

나) 일반회계 예산참조서

- 일반회계 예산참조서는 ①일반회계세입예산명세서 ②일반회계 각 성·청의 예정경비요구서로 구분

- 세입예산명세서는 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재무대신이 작성하여 내각회의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그림 V-6] 일반회계 참조서 중 세입예정명세서



주요국의 예산서 형식

- 일반회계세입예산명세서는 세입예산의 부(部)·관(款)·항(項)·목(目) 단위까지 공개되며, 전년도의 예산액이 함께 명시되어 전년대비 증감 내역을 살펴볼 수 있음
- 세입예산의 각 항목 체계는 “0000-00”으로 구성되는 6자리 코드번호로서, 동 코드번호는 일부 명세서의 세출 분류코드로 동일하게 사용됨
 - 6자리 코드번호의 천단위 한 자릿수 : 부(部)
 - 백단위 한 자릿수 : 관(款)
 - 십단위 두 자릿수 : 항(項)
 - “-” 이후 제일 마지막 구분 두 자릿수 : 목(目), 종래의 목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며 목번호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00으로 표시함
- 세입예산명세표의 항목 구분 체계는 <표 V-1>과 같음

<표 V-1> 세입예산명세표의 부(部)·관(款)·항(項)·목(目) 분류표

부	관	항	목
1000-00 조세 및 인지수입	1100-00 조세	1101-00 소득세	1101-01 원천소득세 1101-02 신고소득세
		1102-00 법인세	1102-01 법인세
		1103-00 상속세	1103-01 상속세
		1124-00 지가세	∴
		1120-00 소비세	∴
		1104-00 주세	∴
		1118-00 담배세	∴
		1106-00 휘발유세	∴
		1107-00 석유가스세	∴
		1117-00 항공기연료세	∴
		1154-00 석유세	∴
		1116-00 자동차중량세	∴
		1114-00 관세	∴
		1115-00 톤세	1115-01 톤세
	1200-00 인지수입	1201-00 인지수입	1201-01 수입인지 1201-02 현금수입
3000-00 관업(官業)익금 및 관업수입	3100-00 관업익금	3101-00 인쇄국 특별회계 수입금	3101-01 인쇄국특별회계수입금
		3201-00 병원수입	3201-01
	3200-00 관업수입	3202-00 진료소 수입	궁내(宮內)병원수입
			∴

<표 V-1> 계속

부	관	항	목
4000-00 정부자산정리수입	4100-00 국유재산처분수입 4200-00 회수금등수입	4101-00 국유재산매출수입 4201-00 특별회계정리수입 4202-00 인계(引繼)채권정리수입 4203-00 임대금등회수금수입 ⋮	4101-01 토지매출대 4202-01 공단인수채권정리수입 4203-08 소비생활협동조합자금대 부금상환금 ⋮
5000-00 잡수입	5100-00 국유재산이용수입 5200-00 납부금 5300-00 제수입	5101-00 국유재산임대수입 5102-00 국유재산사용수입 5103-00 배당금수입 5104-00 이자수입 5201-00 일본은행납부금 5202-00 일본중앙경마회납부금 ⋮	5101-01 토지·수면대출료 5102-01 관권·특허권등 수입 5103-01 일본은행배당금수입 5104-01 예탁금이자수입 5201-01 일본은행납부금 ⋮
6000-00 공채금	6100-00 공채금	6101-00 공채금 6102-00 특별공채금	6101-01 공채금 6102-01 특별공채금
7000-00 전년도잉여금수입	7100-00 전년도잉여금수입	7101-00 전년도잉여금수입	7101-01 전년도잉여금수입

- 일반회계 각 성·청의 예정경비요구서는 주요 경비별로 해당연도 요구액과 전년도 예산액을 각각 구분하여 명시하며, 전년도 대비 증감액도 표시
- 각 성·청의 경비는 우리나라의 성질별 분류와 유사한 형태로 구분·관리되나, 관 또는 항과 같은 분류 체계를 사용하지는 않음

<표 V -2> 예정경비요구서 중 주요경비별 분류 체계

사항(事項)별 경비 구분	
01 사회보장관계비	02 생활보호비 03 사회복지비 04 사회보험비 05 보건위생대책비 06 실업대책비
10 문교 및 과학진흥비	11 의무교육비 국고부담금 12 국립학교 특별회계 이월 13 과학기술진흥비 14 문교시설비 15 교육진흥조성비 16 육성사업비
20 국채비(國債費)	
25 은급관계비(恩給關係費)	26 문관등은급비(文官等恩給費) 27 구군인유족등은급비(舊軍人遺族等恩給費) 28 은급지급사무비 29 유족및유가족원호비(遺族及留守家族等援護費)
31 지방교부세교부금	
32 지방특례교부금	
35 방위관계비	
40 공공사업관계비	41 치산치수대책사업비 42 도로정비사업비 43 항만공항철도등 정비사업비 44 주택도시환경 정비사업비 45 하수도수도폐기물처리등 시설정비비 46 농업농촌정비사업비 47 산림수산기반 정비사업비 48 조정비등
49 화재복구대책사업비	65 식료안정공급관계비
50 경제협력비	70 산업투자특별회계 이월
60 중소기업대책비	95 기타 사항경비
63 에너지대책비	98 예비비

- 주요경비요구표는 전체 요구액을 앞서 살펴본 구분체계에 의해 제시한 뒤, 요구 기관별로 각 경비요구에 대해 세부내역을 밝히고 있음
- 기관별 예정경비요구서는 기관코드, 경비 성격에 따른 코드, 조직별 및 사항에 대한 코드와 같이 부여된 코드를 사용하여 분류

- 기관별 예정경비요구서는 일반회계의 예산서 체계와 동일하게 갑호와 을호로 구분되며, 갑호에 예정경비요구서, 을호에 이월명허비요구서를 제시함
- 이러한 예정경비요구서는 크게 조직별 사항별 내역에 대해 금액 및 설명을 제시한 뒤, 과목별 내역에서 항목단위 코드를 사용하여 경비요구를 표시함
- 을호 이월명허비의 경우 이월명허비가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해 비교적 상세 설명함

[그림 V-7] 기관별 예정경비요구서 일부(황실비)



□ 예정경비요구서 과목별 내역의 각목에 대한 코드번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95 051 - 1 20 4 - 00

① ② ③ ④ ⑤ ⑥

- ① : 주요 경비별 구분, "주요경비별구분표"상의 코드로 95는 기타사항별 경비를 의미
- ② : 목적별 분류, 051은 국토보전비
- ③ : 재정법상 공채금대상비대상별(公債金對象非對象別) 분류, -1은 공채대상경비

주요국의 예산서 형식

- ④ : 경제성질별 분류, 20은 자본형성
- ⑤ : 용도별 분류, 4는 시설비
- ⑥ : 목(目)번호, 의미 없이 순서부여를 위해 오름차순으로 번호 부여¹⁷⁾

이러한 코드번호 부여의 목적 및 분류체계는 예산서의 참고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7) 참고

- 참고에서는 ①예정경비요구서에 대한 항목별 색인 ②예산서에서 사용한 세입 ③세출 및 소관기관 ④주요경비별 분류 코드의 분류 기준 및 분류 번호에 대해 설명
- 코드번호 설정의 목적은, 예산의 내용에 있어서 경비의 성질, 분류 등을 명확히 하여 보다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임

가) 예산서상 세입 코드번호

세입예산명세서의 부관항목별표의 6자리의 숫자 코드는 좌로부터 부(部) 1자리, 관(款) 1자리, 항(項) 2자리, 목(目) 2자리로 구성된다. 주관별명세표의 각 주관(主管)에 대한 2자리의 숫자는 세출의 소관과 동일한 코드번호 체계를 사용하며, 부관(部管) 항목별 구분에 대한 숫자는 세입예산명세서와 동일한 코드번호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나) 예산서상 세출 코드번호

- 예정경비요구서의 주요 경비별표 각 사항 2자리 숫자 : 주요경비별 분류 코드번호
- 각 소관 2자리 숫자 : 소관 코드번호
- 조직별 내역의 사항별 설명표 및 과목별 내역표 각항 3자리 숫자 : 소관에 있어서의 항단위 코드번호

17) 세출의 다양한 분류방식과 코드부여 방식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2>를 참조할 것.

- 사항별 설명표의 각 사항에 대한 2자리 숫자 : 주요 경비별 분류를 명확히 하는 코드번호

- 과목별 내역표의 각목(目)에 대한 11자리의 숫자
 - 좌로부터 주요경비별 코드 2자리
 - 목적별 코드 3자리
 - 재정법공채금 대상비 대상별 1자리
 - 경제성질별 2자리
 - 용도별 1자리
 - 종래 목(目)번호 2자리(단, 종래부터 목번호를 첨부하지 않았던 목에 대해서는 00으로 표시), 한편 목(目)의 구분을 두어 집행하는 항에 대해서는 항의 하부에 목번호 이외의 각종 분류 코드를 추가하여 사용

- 개별 코드 내역
 - 소관 코드 : 가장 큰 분류로서 일단 각 부처별로 구분하며, 최근의 행정개혁을 반영하여 16개의 부서별로 구분. 항-소관별 코드 부여는 001부터 시작한다.

<표 V-3> 소관별 분류

01 황실비	05 내각	09 외무성	13 농림수산성
02 국회	06 내각부	10 재무성	14 경제산업성
03 재판소	07 총무성	11 문부과학성	15 국토교통성
04 회계검사원	08 법무성	12 후생노동성	16 환경성

- 주요 경비별 분류 : 우선 크게는 사회보장관계비, 문교및과학진흥비, 국제비, 은급관계비, 지장교부세교부금, 방위관계비, 공공사업관계비, 경제협력비, 중소기업대책비, 에너지대책비, 식료안정공급관계비, 산업투자특별회계에의 조입 등이 대분류. 이를 세분하여 총 39개의 주요 경비로 구분

<표 V-4> 주요 경비별 분류

01 사회보장관계비	31 지방교부세교부금
02 생활보호비	32 지방특례교부금
03 사회복지비	35 방위관계비
04 사회보험비	40 공공사업관계비
05 보건위생대책비	41 치산치수대책사업비
06 실업대책비	42 도로정비사업비
10 문교 및 과학진흥비	43 항만공항철도등 정비사업비
	44 주택도시환경 정비사업비
	45 하수도수도폐기물처리등 시설정비비
	46 농업농촌정비사업비
	47 산림수산기반 정비사업비
	48 조정비등
	49 화재복구대책사업비
	50 경제협력비
	51 기타
11 의무교육비 국고부담금	60 중소기업대책비
12 국립학교 특별회계 이월	63 에너지대책비
13 과학기술진흥비	65 식료안정공급관계비
14 문교시설비	70 산업투자특별회계 이월
15 교육진흥조성비	95 기타 사항경비
16 육성사업비	98 예비비
20 국채비(國債費)	
25 은급관계비(恩給關係費)	
26 문관등은급비(文官等恩給費)	
27	
구군인유족등은급비(舊軍人遺族等恩給費)	
28 은급지급사무비	
29 유족 및 유가족원호비	

○ 목적별 분류 : 이는 주요 경비별 분류를 좀더 세분화한 것으로 국가기관비가 보다 자세히 유형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

<표 V-5> 목적별 분류

010 국가기관비 011 황실비 012 국회비 013 선거비 014 사법, 경찰 및 소방비 015 외교비 016 일반행정비 017 징세비(徵稅費)	070 교육문화비 071 학교교육비 072 사회교육 및 문화비 073 과학진흥비 074 화재대책비
020 지방재정비 021 지방재정조정비 022 원리보급(元利補給) 029 기타	080 사회보장관계비 081 사회보험비 082 생활보호비 083 사회복지비 084 주택대책비 085 실업대책비 086 보건위생비 087 시험연구비 088 화재대책비 089 기타
030 방위관계비	090 은급비 091 문관은급비 092 구 군인유족등 은급비 099 기타
050 국토보전 및 개발비 051 국토보전비 052 국토개발비 053 화재대책비 054 시험연구비 059 기타	100 국채비 109 공공사업등 예비비 110 예비비 190 기타 191 기타행정비 192 기타
060 산업경제비 061 농림수산업비 062 상공광업비 063 운수통신비 064 산업투자특별회계 이월 065 물자 및 물가조정비	

○ 재정법 공채금 대상 비대상별(公債金對象非對象別) 분류

1	재정법공채금대상경비 및 공공사업등 예비비
2	상기 이외의 것

주요국의 예산서 형식

- 경제성질별 분류 : 경제성질별 분류는 국민경제 계산상 정부지출을 산출하는 경우에 편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경상경비와 자본지출비의 구분을 목적으로 함

<표 V -6> 경제성질별 분류

10 경상지출 11 고용자보수 12 중간투입 13 생산·수입품에 부과되는 조세 14 현물사회급부등 15 무 기금운용 자회사 급부	70 기타 경상이전 71 기타 분류되지 않은 국내경상이전 72 경상국제협력 73 경상국제협력이의 해외이전
20 자본형성	80 지방정부 이전 81 경상지출 82 자본형성 83 현금 사회보장급부 84 사회부조급부 85 경상보조금 86 기타
30 회계간중복	
40 경상보조금	90 기타 91 재산소득지출 92 자본이전 93 공무원 숙소시설비 94 토지무형자산구입 95 기타
50 현금지급 사회보장급부	
60 사회부조급부	

- 용도별 분류 : 용도별 분류는 우리나라의 비목에 해당되는 분류로서, 인건비·여비·물건비·시설비·보조비 등으로 구분

<표 V -7> 용도별 분류

1 인건비	5 보조비·위탁비
2 여비	6 타 회계로의 이월
3 물건비	
4 시설비	9 기타

다) 예정경비요구서의 과목별 내역의 각목에 있어서의 코드부여 체계

□ 사례 1

- 주: (1) 주요경비별 : 치산치수대책사업비
(2) 목적별 : 국토보전비
(3) 재정법공채금대상비대상별(公債金對象非對象別) : 대상경비
(4) 경제성질별 : 자본형성
(5) 용도별 : 시설비
(6) 종래의 목(目)번호

□ 사례 2

- 주: (1) 주요경비별 : 기타 사항경비
(2) 목적별 : 일반행정비
(3) 재정법공채금대상비대상별(公債金對象非對象別) : 비대상경비
(4) 경제성질별 : 고용자보수
(5) 용도별 : 인건비
(6) 종래의 목(目)번호

주요국의 예산서 형식

나. 특별회계예산서

□ 분량 : 총 765페이지

□ 내용 : 특별회계에 대하여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이월명허비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내역 및 관련 사항 제시

□ 특별회계예산서는 계속비 예산을 제외하곤 일반회계예산서와 그 구성이 동일함

<표 V - 8> 2004 특별회계 예산서

목차	분량	개요
1) 예산총칙	16페이지	예산에 대한 총괄 규정
2) 갑호(甲号) 세입세출예산서	40페이지	소관부처별 세입 및 세출예산
3) 병호(丙号) 이월명허비(繰越明許費)	5페이지	소관·조직별 이월명허 사항
4) 정호(丁号) 국고채무부담행위	19페이지	소관·조직별 채무부담 한도, 채무발생 및 상환연도
5) 첨부	682페이지	○ 특별회계예산참조서(參照書) ○ 재정용자자금의 장기운영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평성 15년도 재정투융자계획
6) 참조	2페이지	

1) 예산총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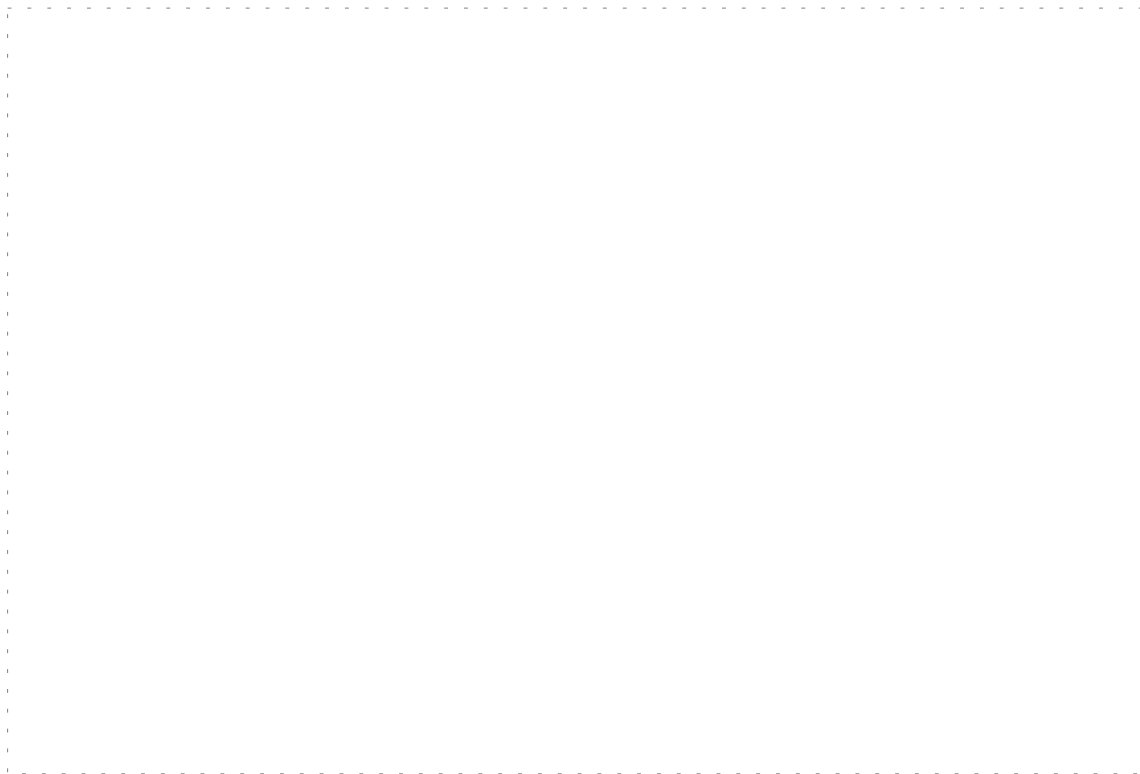
□ 예산총칙의 구성 및 내용은 일반회계의 예산총칙과 동일하며, 그 외 각 예산에 있어서의 재정법상의 근거 법률은 일반회계의 경우와 동일

□ 그러나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와 달리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특별한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하는 회계이므로 소관별로 설치된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액 및 내역이 설명되어 있음

2) 세입세출예산

-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서가 세입부와 세출부가 따로 나뉘어져 작성되는 데 비해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기재되어 있음
-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단년도 예산만 제시되어 있음
- 세입세출예산서는 “소관”부처 및 설치된 특별회계별로 구분
 - 세입의 경우 “관”, “항” 단위까지의 예산을 명시
 - 세출의 경우 “항” 단위에서만 지출내역을 명시

[그림 V -8]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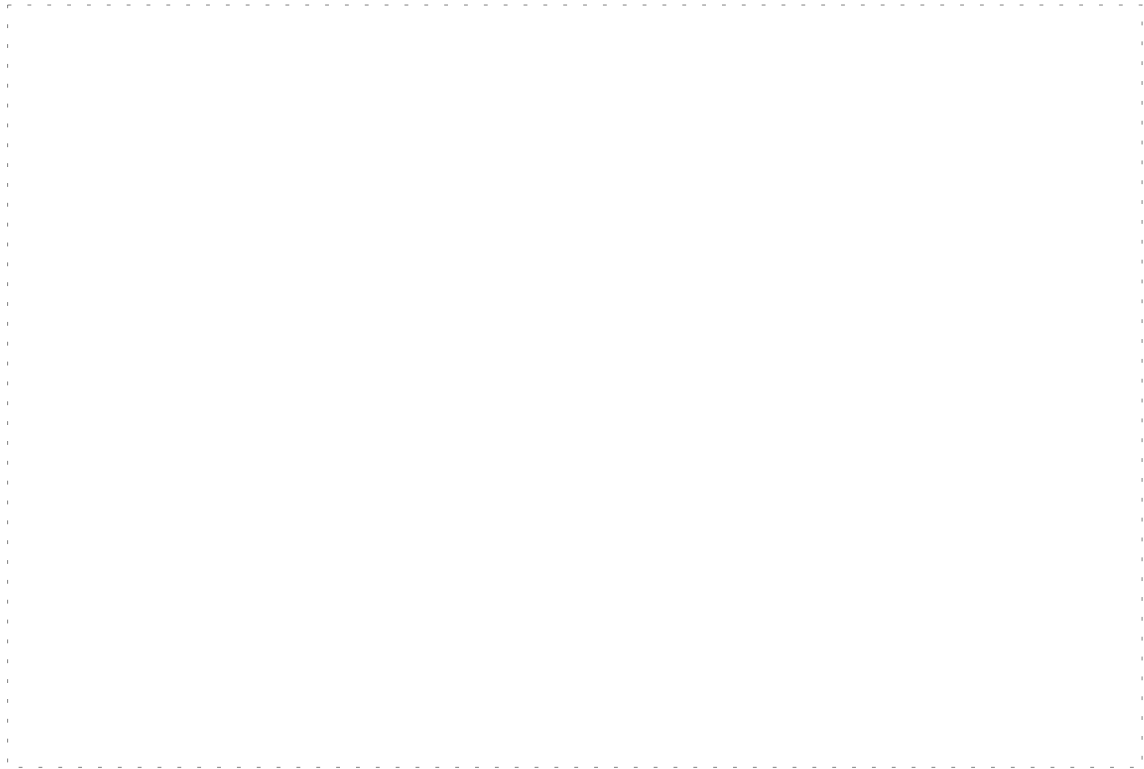
3) 이월명허비

- 특별회계의 이월명허비 예산서는 세입세출예산서와 유사하게 소관 부처별, 특별회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함

주요국의 예산서 형식

- 특별회계의 이월명허비 예산서 역시 일반회계의 경우와 동일하게 해당 발생 사항만을 밝히고 있을 뿐 금액 및 발생연도, 이월의 횟수 등에 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음

[그림 V-9] 특별회계 이월명허비 예산서



4) 국고채무부담행위

- 특별회계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서는 일반회계의 경우와 동일하게 소관 부처별, 특별회계 사업별로 구분
 - 개별 사항에 대해 그 한도액과 채무부담행위가 발생한 해당연도, 국고부담에 따른 연도 및 그 사유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그림 V-10] 특별회계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서



5) 첨부

- 특별회계 예산서의 첨부서류는 ①특별회계 예산참조서 ②재정융자자금의 장기운용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재정투융자계획에 관한 정보로 구성

가) 특별회계 예산참조서(參照書)

- 특별회계 예산참조서는 부처그룹별로 제시되며 다음과 같이 구성
 - 갑호 세입세출예정계산서
 - 정호 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
 - 소관부처별 특별회계 직원 예산정원 및 봉급액표
 - 봉급총액 산정서
 - 각 특별회계별 사업계획서·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자산목록 및 차입금 관련 서류
- 특별회계 예산참조서(參照書) 개별 서류는 특별회계 및 계정의 소관부처별로

주요국의 예산서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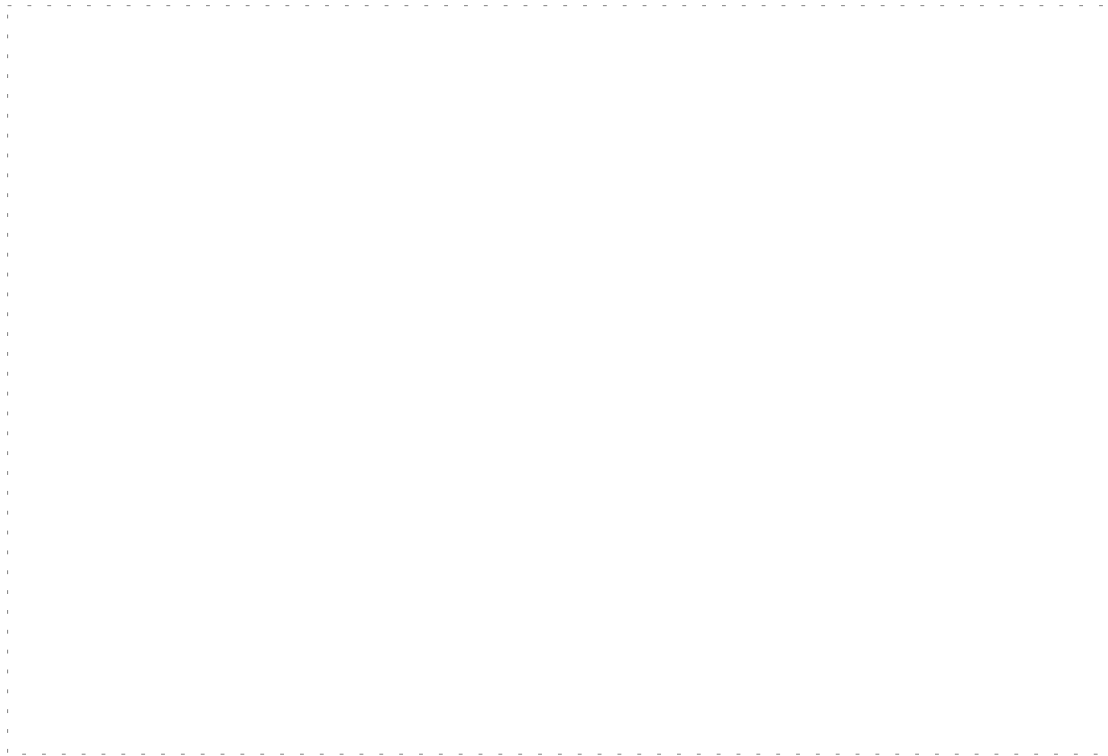
작성·보고됨

- 세입세출예정계산서는 부(部)가 제외된 관(款)·항(項)·목(目) 단위까지만 작성되며, 전년도 예산액 및 전년대비 증감액은 일반회계의 경우와 동일
- 일반회계의 예산참조서는 부(部) 단위까지 포함하여 작성

[그림 V-11] 특별회계 예산참조서 중 세입세출예정계산서-세입



[그림 V - 12] 특별회계 예산참조서 중 세입세출예정계산서-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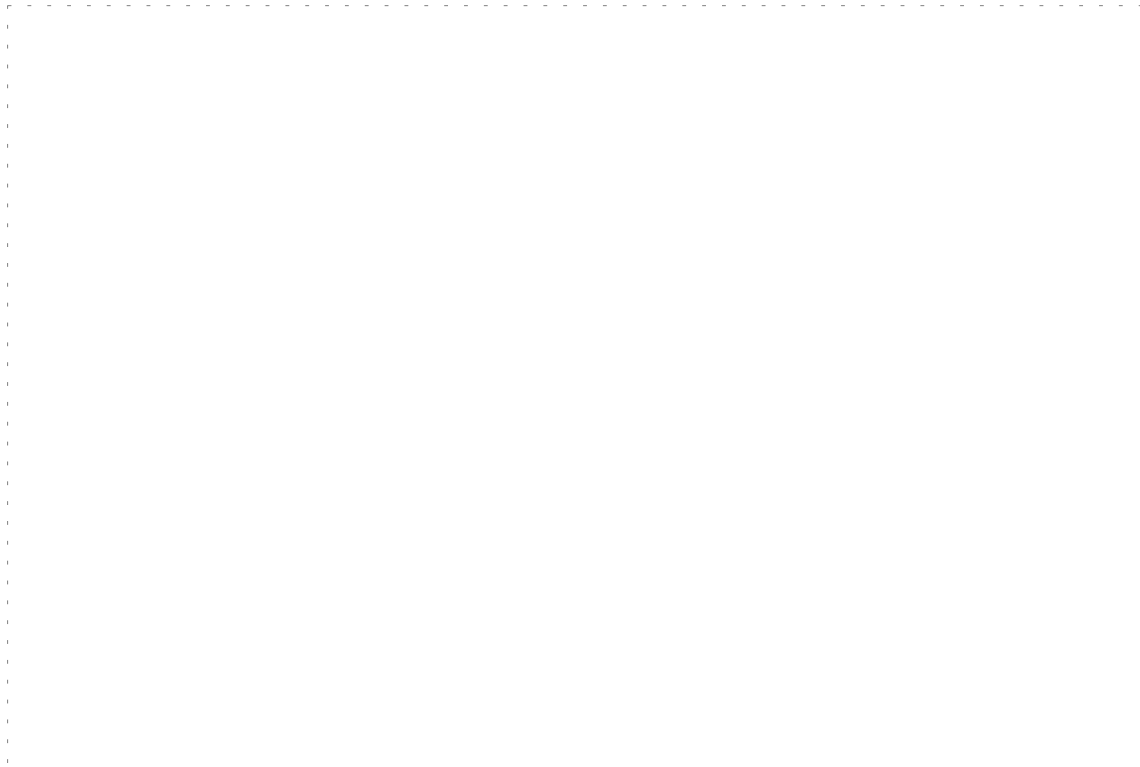
- 경제성질별·용도별 분류코드는 일반회계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며, 특별회계 또는 해당계정에 대해 코드가 부여됨

- 특별회계 및 해당 계정에 부여되는 코드 번호는 5자리 숫자로 구성
 - 왼쪽부터 특별회계 소관 코드번호(일반회계 소관 코드와 동일. 공관의 경우 90) 2자리,
 - 동일 소관내 특별회계의 코드번호 3자리로 구성
 - 3자릿수 가운데 말미의 1자릿수의 1로부터 시작되는 숫자는 특별회계마다 교부한 계산의 코드번호¹⁸⁾

- 세출의 경우 세입과 달리 관·항·목 구분이 아닌, 사항별 내역으로 항단위 까지만 공개
 - 이에 대한 사항, 세출예산 금액, 전년도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과 해당 설명이 제시

18) 위 그림과 같이 “90011” 계정의 공관코드 90, 특별회계 코드 번호 010 중 1번째 교부 계정임을 알 수 있다.

[그림 V-13] 특별회계 예산참조서 중 세입세출예정액과목별표



- 각 특별회계 및 계정별 세입의 관(款)항목별 구분표 및 세입세출 예정액 과목별표의 세입에 교부한 6자리 코드번호
 - 왼쪽부터 관(款) 2자리, 항(項) 2자리, 목(目) 2자리를 나타내는 코드임

- 또한 세출의 사항별 설명표 및 세입세출 예정액과목별표의 세출의 각항에 교부한 2자릿수의 숫자는 특별회계 및 계정마다 교부한 항의 코드번호

- 세입세출예정액 과목별표의 세출 각 목에 교부한 5자릿수 또는 3자릿수
 - 5자릿수 : 국민경제계산상 「일반정부」로 분류되는 특별회계 및 계정
 - 왼쪽부터 경제성질별 2자릿수,
 - 용도별 분류의 1자릿수
 - 일반회계와 동일한 기준인 목(目)번호 2자릿수
 - 3자릿수 : 국민경제계산상 「공적기업」으로 분류되는 특별회계 및 계정
 - 왼쪽부터 용도별 분류의 1자릿수
 - 일반회계와 동일 기준에 의한 목(目)번호 2자릿수